

중재사례를 통해 본 보도 윤리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서 정 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중재위원회의 존재와 운영이 장기적으로 언론창달을 위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운 개혁으로 설립된 지 2년 6개월정도가 지났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는 언론관계자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양분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는 한 시각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 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언론창달에 기여한다고 보는 차원이고, 또 다른 차원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 위원회가 보도자유를 위축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요인이 된다고 보는 차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는 이러한 시각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분히 관념론이나 형식논리에 젖어있는 인상이 강한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중재위원회를 보는 시각들이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운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성되고 제시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기관이 약 2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사건을 얼마만큼 취급하고 처리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이 기관을 기능적으로 발전케 하느냐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 같다.

II. 전체적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1981년 5월 7일부터 1983년 8월 31일까지의 약 2년 4개월이 되겠다. 중재위원회가 최초의 사건을 접수하게 된 시점은 1981년 5월 7일에 해당된다.

중재위원회가 2년 4개월 동안에 처리한 중재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42건에 이른다. 이것을 년도별로 나누어 보면 81년도에는 44건, 82년도에는 50건, 그리고 83년도에는 48건으로서 월평균 5건 정도에 해당된다.

전체 142건을 침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명예훼손이 97건(68%), 명예사생활이 5건(4%), 신용권이 34건(24%), 그리고 저작권이 6건(4%)으로 나타난다. 전체 142건이 4가지 침해유형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이 흥미롭고,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전체의 72%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영역으로 제기될 수 있겠다.

<표 1> 연도별 침해유형
('81. 5. 7 ~ '83. 8. 31)

구분	명 예	명 예 사생활	신용권	저작권	소 계
81년	21 (48%)	2 (5%)	15 (34%)	6 (13%)	44 (100%)
82년	39 (78%)	2 (4%)	9 (18%)	-	50 (100%)
83년	37 (77%)	1 (2%)	10 (21%)	-	48 (100%)
소계	97 (68%)	5 (4%)	34 (24%)	6 (4%)	142 (100%)

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142건을 중재처리 결과에 따라 분석해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합의가 40건(28%), 불성립이 46건(32%), 기각이 2건(1%), 각하가 5건(3%), 취하가 49건(36%) 등이다. 처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취하(36%)와 불성립(32%)이 합의(28%)보다 많다는 사실이 되겠다. 이러한 사실은 중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 된다고 보겠다.

<표 2> 연도별 중재처리결과
('81. 5. 7 ~ '83. 8.31)

구분	합 의	불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소 계
81년	9 (21%)	12 (27%)	1 (2%)	2 (4%)	20 (46%)	44 (100%)
82년	19 (38%)	19 (38%)	-	2 (4%)	10 (20%)	50 (100%)
83년	12 (25%)	15 (31%)	1 (2%)	1 (2%)	19 (40%)	48 (100%)
소계	40 (28%)	46 (32%)	2 (1%)	5 (3%)	49 (36%)	142 (100%)

취하는 피해자와 언론사가 중재현장에 나와서 상호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막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로서 대개 3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전체 49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조건 없는 취하로서 31건(63%)이며, 그 다음은 PR기사게재의 약속에 의한 취하형태로서 16건(33%)이며, 마지막 형태는 자체정정보도 후 취하하는 형태로서 2건(4%)이다. <표 3 참조>

<표 3> 연도별 취하형태
('81. 5. 7 ~ '83. 8.31)

항 목	연 도				소 계
	81년	82년	83년		
자체정정보도후 취하	2	-	-		2(4%)
P.R.기사게재 약속에 의한 취하	-	9	7		16(33%)
조건없는 취하	18	1	12		31(63%)
소 계	20	10	19		49(100%)

합의는 당사자가 중재회의에 출석해서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한 행위로서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합의 후 정정기사 및 사과의 형태로써 전체 40 건 가운데 27 건(67.5%)이며 그 다음은 합의 후 PR 기사 및 보충보도형태로서 13 건(32.5%)에 이른다.
<표 4 참조>

<표 4> 연도별 합의형태
('81. 5. 7~'83. 5.31)

연 도 항 목	81년	82년	83년	소 계
합의후 정정기사 및 사과형태	6	13	8	27(67.5%)
합의후 P.R.기사 및 보충보도형태	3	6	4	13(32.5%)
소 계	9	19	12	40(100 %)

불성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3 가지 이유가 대표적이다. 첫 번째, 불성립 이유는 합의의 결렬상태로서 전체 46 건 가운데 26 건(57%)이며, 두 번째 이유는 피신청인의 불출석 상태로서 18 건(39%)이며,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신청인의 불출석 상태로 2 건(4 %)에 해당된다 신청인의 불출석 2 건은 중재기일전에 피신청인이 자진해서 정정보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표 5 참조>

<표 5> 연도별 불성립의 사유
('81. 5 7~'83. 8.31)

연 도 항 목	81	82	83	소 계
피신청인 불출석	6 (50%)	9 (47%)	3 (20%)	18 (39%)
신청인 불출석	1 (8%)	1 (6%)	-	2 (4%)
합의 결렬	5 (42%)	9 (47%)	12 (80%)	26 (57%)
소 계	12 (100%)	19 (100%)	15 (100%)	46 (100%)

중재신청사건을 대상매체별로 분류해 보면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간신문이 83 건(5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과 주간지가 각각 17 건(12%)이고, 통신이 10 건 (7%), 주간신문이 9 건(6%), 월간지가 5 건(4%), 그리고 월간신문이 1 건(1%)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신청사건 가운데 약 60%가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과 시민의 관계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보겠다.

중재신청사건을 기사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보도기사(일간신문, 주간잡지 및 주간신문)가전체의 53%로서 75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일간신문의 해설 및 논평보도와 통신사의 통신문이

<표 6> 연도별 대상매체
('81. 5. 7~'83. 8.31)

구분	일 간 신 문	동 신	방 송	주 간 신 문	월 간 신 문	주간지	월간지	소 계
81년	34 (76%)	4 (9%)	2 (5%)	2 (5%)	-	2 (5%)	-	44 (100%)
82년	19 (38%)	2 (4%)	13 (26%)	3 (6%)	-	9 (18%)	4 (8%)	50 (100%)
83년	30 (63%)	4 (8%)	2 (4%)	4 (8%)	1 (2%)	6 (13%)	1 (2%)	48 (100%)
소계	83 (58%)	10 (7%)	17 (12%)	9 (6%)	1 (2%)	17 (12%)	5 (4%)	142 (100%)

각각 9 건(6 %씩), TV 뉴스 및 기획프로가 9 건(6.4%)이며, 라디오뉴스 및 기획프로가 7 건(5.4%), 그리고 강연초록(신문)이 5 건(4 %), 사진설명 및 만화(일간신문)가 3 건씩, 외부인사기고문(월간잡지)이 3 건이며 그 다음으로 사설(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잡지의 유료안내 · 해명광고와 가십, 외부인사기고문이 각각 2 건이며,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일간신문), 독자투고(일간신문), TV 다큐멘터리 드라마, 통신사의 사진, 월간잡지의 외부인사 기고문, 평전(월간잡지), 논문(월간잡지)이 각각 1 건으로 나타난다.
<표 7 참조>

전체대상기사 가운데서 신문이나 잡지에 의해서 작성된 일반보도기사(straight news)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보도의 자유와 책임이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주목된다고 보겠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대상기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표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위보도가 39 건(28%)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편파적 일방보도가 30 편(21%), 왜곡보도가 23 건(16%), 오보가 21 건(15%), 과장보도가 12 건(9%), 비방적 중상보도가 6 건(4%), 저작출처의 불명시가 6 건(4%), 조작적 보도가 3 건(2 %), 그리고 약속불이행이 2 건(1%)으로 나타난다.

중재신청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면 일반시민이 전체의 38.5%로서 30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인이 11 명, 군소사회단체장이 9 명, 교사, 소상공인,

<표 7> 연도별 대상기사의 유형
('81. 5. 7~'83. 8.31)

매체별 유형별		년도별			소 계
		'81	'82	'83	
일간신문	일반보도기사	10	12	12	34 (24%)
	통신문전제(일반보도기사)	9	2	12	23 (16%)
	해설 및 논평	3	3	3	9 (6%)
	강연초록	5			5 (4%)
	사진설명	2	1		3 (2%)
	사설	2			2 (1.4%)
	도큐멘터리	1			1 (0.7%)
	가 싯	1			1 (0.7%)
	만 화			3	3 (2%)
	독자투고		1		1 (0.7%)
	외부인사기고문	1			1 (0.7%)
방 송	TV 뉴스	2	5		7 (5%)
	TV기획프로		1	1	2 (1.4%)
	TV도큐멘터리드라마		1		1 (0.7%)
	Radio뉴스		4	1	5 (4%)
	Radio기획프로		2		2 (1.4%)
통 신	통신문	4	1	4	9 (6%)
	사 질		1		1 (0.7%)
주간잡지 및 주간신문	일반보도기사	2	8	8	18 (13%)
	유료안내 및 해명광고	2			2 (1.4%)
	가 싯		1	1	2 (1.4%)
	외부인사기고문		2		2 (1.4%)
	사진설명		1		1 (0.7%)
	해설논평			1	1 (0.7%)
월간신문	외부인사기고문			1	1 (0.7%)
월간잡지	평 전		1		1 (0.7%)
	외부인사기고문		3		3 (2%)
	논 문			1	1 (0.7%)
소 계		44	50	48	142 (100%)

하위직 공무원이 각각 4명, 학부모, 군소금융단체장, 연예인, 학생, 외국인, 언론인이 각각 2명, 그리고 운동선수, 교수, 농민, 연구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난다. <표 9 참조>중재신청자중 교수 1명, 언론인 2명, 그리고 사척단체장 가운데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73명은 일반적으로

<표 8>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언론보도의 문제점

('81. 5. 7~'83. 8.31)

구 분	빈도 (%)	구 분	빈 도 (%)
허위보도	39(28%)	비방적 중상보도	6(4%)
편파적 일방보도	30(21%)	저작출처의 불명시	6(4%)
왜곡보도	23(16%)	조작적 보도	3(2%)
오 보	21(15%)	악속불이행*	2(1%)
과장보도	12(9%)	계	142(100%)

* 원고의 무단개작 또는 원고게재 위치의 문제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직업인으로 평가되겠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9> 신청인의 직업(사회적 지위)

('81. 5. 7~'83. 8.31)

구 분	'81	'82	'83	계
항 목				
일 반 시 민	9	12	9	30(38.5%)
중 소 기 업 인	1	4	6	11
군소사회단체장		6	3	9
교 사	2	2		4
소 상 인	2	2		4
하 위 직 공 무 원		4		4
학 부 모	2			2
군소금융단체장	1	1		2
연 예 인		2		2
학 생		1	1	2
외 국 인		1	1	2
언 론 인			2	2
운 동 선 수			1	1
교 수			1	1
농 민	1			1
연 구 원	1			1
계	19	35	24	78

* 신청인이 여러 매체를 대상으로 중재신청 했을 경우, 1 명으로 계산.

첫째 의미는 긍정적인 것으로 언론보도에 의해서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일반 시민적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의미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선도자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해서 침해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차원이 되겠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조직화되지 않은 계층일수록 언론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논평해야 한다는 점이다.

III. 개별사례의 분석

중재위원회가 약 2 년반 동안에 접수해서 처리한 142 건 가운데서 크게는 언론창달을 위해서 작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시된 사례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분석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1. 통신사의 통신문을 신문사가 전재했을 경우 그 책임의 한계문제

신문사가 통신사의 통신문을 전제한 후 전제한 기사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신문사가 정정보도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재신청이 된 사건 중 통신문전재로 문제가 된 사건은 총 23 건으로 전체 중재신청 142 건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총 23 건을 처리하면서 제시한 원칙이나 당면한 논쟁점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통신사는 기사제작과 반포의 책임을 그리고, 신문과 방송은 기사선택과 공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된다.

(2) 신문 · 방송은 통신사가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경향을 유지하고있다.

(3)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신문 · 방송의 책임은 민 · 형사상의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의 의무에 한정된다. 그 이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신문보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이다.1)

(4) 통신문을 전제한 신문사나 방송사는 중재기일에 불출석하는 일이 높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불출석율은 전체 23 건중 14 건으로서 60%에 이른다.

(5) 비슷한 외국의 사례인 서독의 엘리자베스 폰 토로 대 빌트자이퉁(Elizabeth Von Toro v. Bildzeitung, 1977) 사건에서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빌트자이퉁(Bildzeitung)지가 통신사인 트랜스월드(Transworld)사로부터 문제 된 사진을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참고 될 수 있는 법원판례라고 생각된다.

2. 만화에 의한 풍자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느냐의 문제

만화내용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드문 현상이다. 따라서 금년에 중재위원회에서 문제시된 두 사례는 만화와 개인권의 침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1) C 일보 만화 사례

C 일보는 1983 년 3 월 11 일자 8 면에 대학정원 탈락생에 대한 문교정책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 이 만화는 『당국자 : 대학탈락생은 밥통대학으로 가라』, 『만화주인공 : 그게 아닙니다.』, 『당국자 : 정정한다. 방통대로 가라』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한국방송통신대학 총학우회 회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 총동창회회장)은 그러한 만화의 게재는 공익신문이 지녀야 할 공정성과 정확성을 잃은 것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오도케 한 몰지각한 표현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학생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C 일보 만화가 문교정책을 풍자하려고 한 것이지 방통대학을 대상으로 풍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본의와는 달리 방통대에 피해를 주었다면 해명해주겠다고 항의했다.

그 결과 C 일보는 1983년 3월 29일자 만화 바로 밑에 사과를 겸한 해명서를 게재하였고 또한 1983년 4월 7일자 8면에는 7단 27cm 크기의 홍보 기사를 게재,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2) J 일보 만화 사례

J 일보는 1983년 8월 16일자 7면에 독립기념관 성금과 불꽃놀이를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만과주인공 : (전화를 걸면서) 기념관 당국이죠? 내가 낸 성금으로 벽들을 몇 장 쌓게 되죠?』, 『독립기념관 : 얼마냈지요?』, 『주인공 : 만원요』, 『독립기념관 : 이미 썼수다. 불꽃놀이 화약 한방에 9천원이요』 순서로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은 건립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성금을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기공식비용도 정부국고보조금 중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공식 불꽃놀이도 8.15 경축을 겸해 충청남도과 천원군에서 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 일보는 마치 국민이 낸 성금을 낭비한 것과 같은 기사를 냄으로써, 기념관건립추진업무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만화는 성금을 낸 사람으로서 기왕이면 불꽃놀이보다는 한장의 벽돌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렸지,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1983년 8월 19일자 11면에 만화를 통해 『알림 : 8월 16일자 만화 중 불꽃놀이 화약 값은 성금과 관계없음』 알려졌습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그들이 중재위에 제출한 정식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만화는 사실적 보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보도에 대한 해설기사도 아니다. 따라서 만화를 보도나 해설기사와 똑같은 차원에서 처리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화가 보도나 해설기사가 아니라고 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공표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만화에 대한 독서율과 인기가 상승하고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책임 또한 중요시될 필요성이 증대된다.

셋째, 만화는 만화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서 압축, 풍자, 해학, 비유 그리고 과장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분내용을 적시해서 문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도나 주제를 중심으로 평가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만화와 개인권의 침해와 관계되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내어서 한국상황에 적절히 적용하는 연구과제가 제기된다.

3. 학자의 원고가 일부 삭제되고 수정되어 게재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김용서 교수는 1983년 4월호 H 월간잡지에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이란 제하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신청인은 H 월간지가 자기와 하등의 의논도 없이 자기의 원고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게재했다고 주장하면서 본래의 원고를 그대로 다시 게재하고, 말미에 발행인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원고재게재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필자와 사전협의 없이 수정 보완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완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H 월간잡지에게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사고를 게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 되었다.

신청인은 중재가 불성립 되자 1983년 4월 30일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83년 8월 26일 법원은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주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자, 즉 그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자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잡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법 또는 저작권법 (예컨대 동법 제 16 조의 원상 유지권)등에 기한 청구권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와 같은 판결이유를 통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1983년 9월 7일 항소하여 계류중이다.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1)청탁된 원고가 정기간행물에 의해서 사전협의 없이 가감첨삭 되었을 경우 필자의 명예회복이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현재계류 중에 있으니까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필자의 명예회복은 민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성취될 수 있지만 법 이전에 윤리문제로 해결됨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청탁된 원고를 필자의 사전동의 없이 가감첨삭하는 일부 간행물의 타성은 속히 시정됨이 바람직하다.

4.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J일보는 1981년 9월 2일자 11면에 『군경유가족회장 등 2명 사기혐의 입건』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과 동국개발대표 송준빈씨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초 원호단체후원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자들간의 오해로 야기된 것인데 J일보는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훼손 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신청 접수 후 J일보가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사실을 보도하자 신청인은 취하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특정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언론이 형사피의자를 범인으로 보도한다든지,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보도행위는 법적인 차원에서나 학문적인 차원에서 「언론재판」 혹은 「여론재판」의 문제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한국언론의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사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품신이 있기 전에 검찰조서만을 토대로 범인인 양 보도할 경우, 화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보겠다.

(2)민사사건의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어 보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보도가 요청된다. 영국의 판례를 보면 Attorney-General v. Times News Papers, Ltd.사건(1974)에서 상원은 신문이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의 권리포기를 촉구하는 것은 법정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2)

(3)소송중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사가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은 전체 142건 가운데서 30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방적 편파보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쌍방보도만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않는 진실된 보도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인기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는 얼마만큼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

J주간지는 1982년 2월 28일자 15면에 『탤런트 엄유신 유부남 병원장과 룸살롱 데이트』란제하의 기사에서 독신녀 탤런트인 엄유신이 살롱에서 30대 병원장과 농밀한 열애를 즐기고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병원장 부인과도 친숙한 사이이며, 동료 탤런트와 함께 간 적은 있어도 병원장과 단둘이 간 적은 없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무근한 허위 기사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중재결과 J주간지는 잘못 보도된 것임을 시인하고 신청인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인기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와 관련된 사건은 이것 외에도 임지영 대 일간 S지, J주간지와 임호균 대 K주간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대개 아래와 같다.

(1)인기인과 관련된 사건의 피신청인이 모두주간지라는 사실은 주간지·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2)인기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한결같이 PR 기사를 내어주든지 아니면 기사를 약속한 후 취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인기에 예민한 인기인의 취약점을 주간지가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경계 되어야 한다.

(3)인기인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기인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기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의 문제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겠다.

6. 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한 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발족한 후 처음으로 지난 1983년 2월 21일에 J일보, S주간지, 그리고 J주간지에 대하여 언론기본법 제 50조 8항에 의거하여 기사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언론기본법 제 50조 8항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981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위원총회에서 「언론침해 시정권고 기준」을 법에 따라 제정한 바 있다.

첫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기사는 3개 매체의 보도사진으로서, J일보는 1983년 1월 21일자 11면에 『사진촬영은 구실일 뿐, 잔혹한 변태행위』 제하의 머리기사를 보도하면서 범인 이씨가 김양에게 극약을 먹인 후 김양이 숨지기 전 가슴을 쥐어 뜯으며 괴로와 하며 죽어가기까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6장을 게재하였으며, S주간지는 1983년 1월 30일자 20-21면에 걸쳐 『잔혹한 연출…… 살인작가의 사진첩』이란 제하로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 10장을 특집으로 보도했으며, J주간지는 1983년 1월 30일자 20-21면에 걸쳐 『변태사진작가의 두 얼굴, 컬러판 죽음의 순간들』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역시 죽어가는 여인을 찍은 사진 4장과 범인의 아내를 모델로 찍은 괴기스런 장면사진 3장을 컬러판 특집으로 보도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3년 2월 21일에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이들 3개 매체의 사진게재는 명백하고 현저하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서 「언론침해 시정권고 기준」 제 2항, 제 3항, 그리고 제 4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언론기본법 제 50조 1항과 8항에 의거, 해당매체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이번 사건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판단과 시정권고의 행위는 사건이 미친 영향력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평가되며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최초의 관례를 남긴 사실은 의미 있는 사태 진전이라 평가된다.

(2) 중재위원회에 의한 시정권고는 언론보도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본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되어야 하고, 특히 「언론침해 시정권고 기준」은 가능한 한 축소적으로 적용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7. 합의사항대로 정정치 않아 재정정한사례

K신보사는 1982년 8월 30일 2면의 『취재 뒤안길』란에 「교사봉급 문제로 말썽을 빚은 의정부 복지중학교는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자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복지 중·고등학교 교장 안채란씨는 위 기사는 허위 조작된 기사로서 교직자들의 신성한 위치를 모독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잘못 보도된 부분을 시인하고 정정보도 했으나 항의사항에 없는 부분을 첨가해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이 법원에 재정정을 요구하는 정정보도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하자 화해하고 피신청인은 재정정보도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위원회에서 성립된 당사자간의 합의의 중요성과 법적효력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기본법 제 50조 6항에 의하면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치 않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근거하여 간접 강제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공익기관인 언론이 시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합의사항은 합의된 대로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8. 취하 또는 합의된 후에 발생하는 정정보도상의 문제

중재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142 건 가운데 취하가 36%, 불성립이 32% 그리고 합의가 2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하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는 조건 없는 취하가 63%, PR 기사 게재약속에 의한 취하가 33%, 그리고 자체 정정보도 후 취하가 4 %이다. 조건 없는 취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대부분의 이유는 PR 기사의 게재나 보충보도를 약속한 경우라고 짐작된다.

합의된 경우에도 전체 40 건 가운데 정정 또는 사과형태가 27 건(67.5%)이고, PR 형태 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 형태 그리고 보충보도의 형태가 13 건(32.5%)에 이르고 있다.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식으로 정정하든지 사과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PR 기사 인터뷰기사 혹은 보충기사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차원은 그러한 유형의 기사들이 신청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 합의의 경우는 진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근거하여 재정정을 요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취하의 경우는 신청인이 그러한 기사들을 문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사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보도태도가 요청된다.

두 번째 차원은 그러한 유형의 기사들이 비록신청인의 요구에 적합하게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서로 상반되게 게재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공신력이나 독자와 시청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9. 언론사가 법원의 정정보도 게재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K 주간지는 1982년 4월 4일자 23면에 게재된 『섰다판서 결재도장 찍고 여직원과 놀아난 실성 공무원』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 북구 건축과 임모씨 등 6명의 공무원들이 6개월전부터 민원처리는 하지않고 여관방에서 노름을 했으며 부하 여직원과 탈선행각까지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형신씨는 중재신청을 통해서 자신은 동료직원과 우연히 만나 화투놀이를 했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일이 있을 뿐인데 K 주간지가 여직원과의 불륜행위까지 있었다고 과장, 왜곡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정정보도는 해주겠으나 피해보상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섬으로써 중재가 불성립되어 신청인이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후 불성립되어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정정보도청구 사건으로 법원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 북구 건축과 모씨……」라는 내용은 비록 그 성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어려움 없이 임모씨가 신청인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며 또한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거나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진실보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K 주간지의 23면 전면에 걸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는데도 K 주간지는 29면에 40 칼럼센치미터의 크기로 밖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불성립된 후 법원이 정정보도를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서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리차원에서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2) 언론사가 법원의 판결을 판결대로 이행치 않은 태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피해 받은 시민의 권익회복을 위해 인색한 경우로 평가된다.

10. 중재불성립 후 법원의 정정보도 게재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이 간접강제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례

D 일보는 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이의향은, 자신은 장애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일도 없고,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일도 없으며, 회비를 착복한 사실도 없다면서 D 일보의 기사는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인해서 자신이 소속한 협의회 공신력이 추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언론사가 출석치 않아 불성립되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의 정정보도청구 신청심의 판결을 통해 보도된 기사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신문은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 받은 자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D 일보가 판결주문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판결주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한 날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지연 1일에 대하여 1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신청하자,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게재하지 않을 시 이행완료까지 하루 5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D 일보의 정정보도문의 게재 후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론사는 시민권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중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의 있는 자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언론사가 중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청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정정보도해 줄 경우 합의조서에 차후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언론사에 묻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언론사의 경우 정정보도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언론사의 경우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공신력을 단기적으로 손상당하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성의 있는 정정보도태도는 훼손된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3)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숨어서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보도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함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IV. 결 론

언론중재위원회가 2년 4개월동안 처리한 142건을 전체적으로 혹은 사례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다.

1. 문제점

(1) 언론에 의해서 문제된 개인권의 침해유형 가운데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가장 지배적이다. (전체의 72%)

- (2)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의 가장 지배적인 대상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일반시민 계층이다. (전체의 94%)
- (3) 권리침해와 관련된 언론사 가운데 일간지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다. (전체의 60%)
- (4) 기사유형별로 보면 일반보도기사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다. (전체의 53%)
- (5) 문제된 기사와 유형을 세분화하면 허위보도, 편파적 일방보도, 왜곡보도, 과장보도, 그리고 비방적 중상 보도 등으로 압축된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분류)
-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문제를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 경우는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취하와 불성립이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다)
- (7) 중재현장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이든 혹은 막후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이든 언론사는 합의사항을 합의된 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 (8) 언론사에 의한 정정보도는 단기적으로는 언론사의 공신력을 훼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침해된 시민권의 회복이란 차원에서 시민의 호감과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위로 평가된다.
- (9) 재판전 보도는 「여론재판」 혹은 「언론재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함이 요청된다.
- (10) 청탁된 원고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자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가감첨삭하지 않는 관행이 준수됨이 바람직하다.

2. 앞으로의 과제

- (1) 신문·방송이 통신문을 전재했을 경우의 책임의 문제, 만화나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 청탁된 원고가 개작되었을 경우 정정보도의 문제, 정정보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그리고 인기인의 사생활과 명예는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하겠다.
- (2) 언론은 국가이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도덕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적 기관이다. 그러니까 국민적 기관으로서 언론의 정통성과 힘은 근원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연유된다는 뜻이다. 언론보도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한 침해하지않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주>

- 1) 박용상,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3년 여름호, p.39.
- 2) 언론중재, 1983년 여름호, PP.155~160 참조.

- 연세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신문학박사)
- 저술 : 「신문학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